

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상당사례(Q/A)

Q1	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대상은?
A1	●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,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
Q2	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을 요양기관에 신청 시 제출서류?
A2	● 제출서류 : 출산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단, 신청서 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이 충족 될 경우 출생증명서 생략가능
Q3	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
A3	●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(「민법」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)입니다.
Q4	조산아 및 저체중아 출생일은 언제입니까?
A4	●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출생일입니다.
Q5	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A5	● 제도시행일(2017.1.1.)로부터 출생 후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. 1. 시행일(2017.1.1.)이후 태어난 조산아 등의 경감적용일은 출생일 기준 31일 경과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31일 소급하여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 까지 경감적용 2. 시행일(2017.1.1.)이전 태어난 조산아 등의 경감적용일은 신청일 부터 31일 소급하여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적용